

제386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4월19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1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64)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8)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7)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6)
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5)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8)
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0)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4)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9)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9)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0)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97)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94)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9)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9)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01)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3)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2)
20.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59)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6)
2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31)
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2)
2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8)
2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6)
2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1)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8730)
2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40)
2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83)
30.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869)
3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5)
3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3)

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1)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4)
3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95)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78)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5)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87)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1)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8)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65)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4)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3)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3)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37)
4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9)
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2)
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13)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17)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36)

상정된 안건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1) 4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4) 4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8) 4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7) 4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6) 4
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5) 4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8) 4
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0) 4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4) 4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9) 4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169) 4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0) 4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7) 4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4) 4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9) 4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9) 4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1) 4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3) 4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2) 4
20.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9) 4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6) 4
2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1) 4
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2)	4
2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8)	4
2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6)	4
2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1)	4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0)	4
2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0)	4
2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3)	4
30.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9)	4
3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5)	4
3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3)	4
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4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4)	4
3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5)	4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	4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5)	4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7)	4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5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	5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5)	5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4)	5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3)	5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3)	5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7)	5
4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9)	5
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5
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3)	5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7)	5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6)	5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도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질의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 및 소위원회 개선 등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이 사임하시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께서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체육관광법안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이 사임하시고 배현진 위원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법안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이 사임하시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께서 체육관광법안소위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의겸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김의겸입니다.

김진애 의원님의 뒤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모자란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고맙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상정한 후에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4)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8)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7)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6)
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5)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8)
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0)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4)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9)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의안번호 2108169)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0)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7)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4)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9)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9)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1)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3)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2)
20.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9)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6)
2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1)
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2)
2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8)
2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6)
2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1)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0)
2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0)
2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3)
30.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9)
3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5)
3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3)
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4)
3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5)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5)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587)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4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5)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4)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3)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3)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7)

4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9)

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3)

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7)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6)

(10시14분)

○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0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 및 결의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재 의원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를 출신 김희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문화예술인은 전시 시설과 미술작품 판매처 등이 부족하여 매우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지방의 문화예술인에게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매우 적고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작품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예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릴 법안은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보보호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 방지,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

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훼손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21%를 기록해서 주요 38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연평균 3486건에 달하며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율이 46~56%에 달하는 등 절반 이상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서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언론사가 공정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게 게재되도록 명시하고 언론사가 비방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배상액 산정 시에는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를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언론위원회의 권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하고 위원회의 7분의 1 이상이 10년 이상의 인권 및 언론감시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도록 해서 법조 및 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80%는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못된 보도를 응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의원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부자 스포츠로 인식되던 골프를 대중화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중골프장은 1999년 37개소에서 2020년 330개소로 9배나 증가하고 이들이 받은 세금 혜택이 1조여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누린 대중골프장 중 상당수가 유사회원 모집행위 등을 통해 사실상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거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유사회원제 모집행위로 대중골프장 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대중골프장의 주중 이용료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3배나 높은 18.6%나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충청권 대중골프장의 주중 이용료는 1인당 16만 3000원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도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책 취지와는 달리 현행법상으로는 대중골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막대한 탈세와 함께 골프인들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1월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과 함께 기재부, 문체부, 지자체 및 골프장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심도 깊은 논의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행정실에 전달해 놓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

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중골프장 운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까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법률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중골프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막고 정부의 세금 인하 혜택이 골프장 운영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점검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1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5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30건의 법률안과 문화재청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체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3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중 조승래·유동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게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콘텐츠 분야의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여 2009년 장르별 진흥 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다는 점과 민간 자율심의가 확대될 경우 선정적·폭력적인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쪽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다양한 지역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기관 등이 협찬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요청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광고 절차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광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제적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송법상 광고와 분리되어 있는 협찬고지를 정부광고에 포함하게 되면 법률 체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있고 지역문화재단이 상당 수준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 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술인 등에만 한정되는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체육, 관광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개의 제·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지금 국회 심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쪽에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중 이용 의

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화재의 유실·도난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목록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문화재의 거래를 방지하는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의 다른 조문에서 ‘유실(遺失)’의 한자 병기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문화재청장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위원 중에서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재위원의 자격 중 언론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과 언론 분야 전문가를 위촉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0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스마트관광산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하던 것을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여 확대하면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공유숙박업으로 규정하고 내국인 영업일수 연 180일 제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겸영 금지, 안전·위생기준 준수의무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최근 공유숙박이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나 등록확인이나 내국인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내국인 이용,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숙박업을 양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저렴한 체험형 숙박공간을 제공하고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며 공유숙박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내국인의 영업일수 제한을 관리하는 행정비용과 내국인 역차별, 관리감독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의 부재, 마을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 영업일수 제한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이병훈 의원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막대합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사업자를 지원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사업자의 재기를 도와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게 하고 관광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난의 범위가 넓고 일부 재난에 대해서

는 타 개별 법령에 지원의 근거가 있으며 관광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바 재정 지원의 형평성·효과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0년 1월부터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민선 체육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보조사업자인 지역센터를 현재 13개소에서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총 21개소로 증설하되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추가 소요되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담비율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불법도박으로 인한 도박중독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센터 접근 편의성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주말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 위탁운영에 따른 직원의 고용 불안이 신뢰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상담 업무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센터 1개소당 사업비가 2021년도 기준 7500만 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어 제대로 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적극적 도박중독의 예방·치유활동을 위해서 지역센터를 증설하되 직영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되는 운영비 등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담비율을 상향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행산업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직영센터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를 김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장관님,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들도 지금 제출이 돼 가지고 논의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손실보상이 저는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절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가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적절한 보상재원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연후에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소급 적용에 대한 요구를 우리 국민의힘 등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들, 특히 문화예술 관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상이 적절한 것인지 또 소급적용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지금 4차 추경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계 전체에 대한 손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잡혀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법안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체육이라든가 관광 또 다른 상임위의 모든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제가 요청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업이라든지 관광·여행업이라든지 또 숙박업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작년, 올해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피해조사는 해서 피해액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관광 분야가 16조 원이고,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기준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김승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글썽요,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정돼 있지는 않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회에서 이번 달 거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간에 활발히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법안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앞서 제가 질문한 손실의 규모 또 실질적으로 이 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재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할 것인지, 소급적용은 할 것인지, 말 것

인지 이런 것들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이미 고민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전체 부처 차원에서 합의가 전제가 돼야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될 텐데 그런 준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위원님, 업종·업계별로 손실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은 윤곽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 총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누가, 누구에게는 얼마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당장에 법안 심의를 위해서는 손실의 규모 또 문체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상의 적정선,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드리면, 총액은 잡혀 있고요 디테일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 줄 거냐의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유동수 의원이지요, 컴플리트 가차 아이템 제공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제출이 돼 있고 가장 거기서 핫하게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분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 아니겠습니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련되는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진행을 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게임업체와 간담회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은 대충 들었는데요. 자율 심의, 자율 등급 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그것을 말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0%,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임업계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소비자, 이용자

들을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법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화한다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업계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조정하면서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법제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이용자들,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김승수 위원 지금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컴플리트 가차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완전히 금지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원천금지는 과도하게 부담으로 업체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정보 표시의무 신설 효과 등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관계의 게이머라든지 업체라든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저는 법안 관련 질의는 아니고 현안 관련 질의인데요.

지난 4월 14일이 도쿄올림픽 D-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진천에 미디어테이에서 올림픽 선수단 백신 접종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차관님, 문체부에서는 선수단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질병청과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아스트라제네카는 1·2차 접종 간격이 8~12주로 길어서 지금 1차 접종을 시작해도 2차는 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7월에야 가능

합니다. 발열과 근육통 등 백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으로는 선수들이 100% 컨디션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또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문제로 안전성에 의문이 커지면서 접종 중단 또는 제한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도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은데요. 하루 빨리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해서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김예지 위원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셔서 지난 5년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린 우리 선수들, 도쿄올림픽을 편만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닐 텐데요 백신 접종이라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화이자 백신 접종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질병 당국하고…… 화이자 한 3주 정도 1·2차 접종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질병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 위원 도종환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류는 K-pop하고 드라마 등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됐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한 인기는 계속 있지만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일상화됐는데 이에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이야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웹툰의 특성을 보면 이것은 그 자체로

서의 상품가치가 있지만 또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확장되는 원천 IP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치 창출이 무한할 수가 있고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또 웹툰은 최초 창작과정에서 드라마하고 영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요 또 한계 없이 아주 다양하게 발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웹툰을 기반으로 한, 한 번 성공한 웹툰을 다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할 때 초기비용이 덜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웹툰에서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 냈기 때문에 영상화하는 데 보다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더니 2018년 기준으로 웹툰을 포함한 만화가 전체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0.4%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15%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K-pop과 드라마 이후에 한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웹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현행법 자체에 보면 웹툰이 포함된, 만화를 종이에 그리거나 아니면 디스크에 구워져야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것만을 정의하고 있어서 웹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웹툰에 대해서는 결국은 제외되어 있고 지원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수출 실적에 대해서 보면 만화 수출 실적 중에서는 만화보다도 웹툰에 관한 수출이 월등하게 많은데 구분해서 통계가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웹툰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잘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위원님 말씀대로 웹툰은 실제로 그림이라든가 이런 미술적 가치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 안에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웹툰 자체가 웹상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라든가 영화로의 확장성, 그다음에 실제로 신기술하고 융복합되는 과정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만화에 대한 포괄적 규정 말고 웹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도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욱 더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웹툰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용권리를 획득했고 또 보니까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웹툰의 상표권을 등록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웹툰 이게 2000년도에, 천리안 잘 아시지요? 천리안에서부터 나온 용어고 한 20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고유명사인데 이렇게 한 회사가 등록을 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게 네이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카카오톡이나 NHN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디, 레진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다양하게 이 웹툰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플랫폼을 만들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한 회사가 이렇게 독점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네이버는 이게 어떤 국가에서는 사용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무관하게 개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상표 등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쟁 업체에 대해서 금지를 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경쟁 업체의 입장에서는 산업이 막 커졌을 때 이게 말로는 의도는 없다 그렇게 해도 갑자기 웹툰이라는 단어를 금지해 버리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더 잘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을 이 관련자들, 관련 업체들과 한번 같이 상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웹툰에 대한 정의가 법제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제출되는 법안들, 오늘 상임위에 제안되는 법안들을 보면 상당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산업 또 관광산업, 체육계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 법안으로 뭘 하기에……

너무 시급한 사안이 극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마산합포, 마산에서 지난주에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시민극장이라는 극장을 재개관했습니다. 당시에, 마산이 한때 7대 도시로 갈 때는 개봉관이 많았거든요. 시민극장, 중앙극장, 3·15극장, 강남극장 이래 가지고 영화가 한번 개봉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인근에 다 오니까 그 인근에 마산 창동, 부림시장, 한꺼번에 인파로 넘치고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추억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폐쇄됐던 극장을 시민들이 스스로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시가 월세를 일정 부분 몇 년간 부담해 주는 조건인데, 이게 무엇이나면 특히 문화 중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시구라든가 지역 도시들의 바람이, 갈증이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시민극장이라는 극장이 개관됐지만 당장 여기는, 이게 멀티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관으로 크기는 어렵겠지요. 여기는 예술영화라든가……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오래된 영화, 커크 더글라스 특별전이라든가 또는 연극 같은 것으로 문화예술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게 대표적으로 영화가 단순히 문화산업,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극장 자체가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한 동네, 한 구도심의 흥망과 관련이 돼 있다는 그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마산에는 경남대학 앞 댕거리라고 하는 곳에 극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가 있는데, 또 회원구 합성동 쪽에는 CGV가 있고. 사실은 웬만한 도심이 아니면 극장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항상 극장을 바라고 극장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민극장이라는 그런 작은 옛날 극장을 시민들이 스스로 다시 세우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극장이고 영화산업인데 최근 댕거리에 있는 극장들도 보면 영화를 개봉

하기가 힘들답니다. 우선에 영화 관객 수가 적으니까, 그동안 가뜩이나 고전했는데 지금 다시 미나리며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되면 기대가 크고 하지만 배급사들이 영화 개봉을 도와주지를 않는답니다. 지금 너무 관객들이 안 오니까 배급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배급을.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대개는, 미국 배급사들은 한 몇백만 돼야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고, 그 대신에 OTT로 바로 가 버리지요. 그렇게 되면 영화산업 전체, OTT 산업이야 별도의 기회를 맞은 셈이지만 우리 영화산업, 전통적인 영화산업, 극장산업뿐 아니라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구도심의 상권이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역 도시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구경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면 ‘미나리가 이번에 상을 받았다 하더라’ 구경을 오면 왔다가 옆에서 떡볶이도 먹고 옷도 한 벌 사고 이렇게 해서 지역 상권이 돌아가는 건데 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극장들이 관객 수가 줄고 급기야는 국내의 배급사들이 관객이 없으니까 영화 배급을 해 주지 않겠다 해서, 극장이 힘들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극장 임대료를 내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지원하기에도 지금 너무 촉박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문체위의 결의로 몇 가지 예산,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정주 의원이랑 제가 예결위에서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부는 일자리 때문에 거기에만 몰두해 가지고 기존의 산업에서 정말 고생하고 고전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이 분야를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지금 여러 산업 분야가, 문화산업, 체육, 관광 다 어렵습니다라는 특별히 지역경제랑 직결되어 있는 이런 극장산업 배급 문제 여기에 마중물이라도 몇 개월 동안 긴급하게 수혈해 줄 수는 없는지……

그래서 극장에 영화가 새로 들어와야 미나리가 히트를 치고 또 무슨 미국영화가 새로 연결이 되는데, 영화가 와야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극장에 들어가고 극장에 와야 이웃 상권에서 또 물건을 사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이럴 텐데 이런 문제를 쿠폰 정도를 넘어서서, 쿠폰 배급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관건, 이런 산

업 분야에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가 추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정 당국의 그걸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다. 장관께서 문체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영화산업은, 또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서 실제로 영화관, 상영관이 여러 가지 다른 공연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허브공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상영관이 어떻게 고도화되고 발전하느냐 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개봉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부가 60억 원 정도…… 실제 영화는 많이 만들어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봉을 지원하는, 그래서 독립영화 쪽에 10억 정도하고 일반 상영홍보비라든가 대관료로 해서 6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영화산업이라는 것은, 진짜 모처럼 엄청나게 우리가 콘텐츠를 키워서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칫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있는 지원사항과 또 필요하면 문체부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이 여건이 있는지 그걸 포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 질의……

○위원장 도종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상정일이라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1소위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질문을 장관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도에 언론기본법에 의거해서 독립기구인 준사법기구로 탄생을 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가 구체해야 되는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언론중재위가요?

○배현진 위원 보호해야 하는 대상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이의제기한 부분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배현진 위원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당사자 그리고 동시에 언론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언론도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라고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오늘 최강욱 의원께서 일부개정 법률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보면서 일부 취지에 관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 온 일이 이를 떼면 보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과도한 신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론을 보호하는, 즉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정부기관 밑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속하도록 지금 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장관님, 와치독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배현진 위원 어떤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옥죄듯이 감시·감독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배현진 위원 언론과 권력, 즉 정부의 권력을 좀 견제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신문방송학도, 아니면 인문사회학도라면 1학년이면 다 아는 그런 단어인데요.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처럼 소속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장관님?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문체부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이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문체부도 언론의 자유도를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포스트도 그 이유로 디지털뉴스 헤드쿼터를 한국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서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준수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고 이것을 문체부 산하의 정부기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장관님의 관점을 제가 여쭙고 싶었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일

반 국민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법안을 심사할 때 정부의 그런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헌 위원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이상헌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선임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중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이 그 위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국정원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헌 위원 지난 금요일 국가정보원은 김남주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약 200페이지나 되는 개인사찰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 현재까지 국정원의 개인사찰 기록으로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중 문화재 관련 인사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아직 확인된 사실 없습니다.

○이상헌 위원 확인 못 해 봤어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이상헌 위원 자,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일입니다. 국정원 사찰 기록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현장조사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 문화재전문위원 자격 박탈 방안을 강구할 것, 정부 정책 및 국책사업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시범적 조치할 것, 넷째 다른 문화재전문가를 총동원해 가지고 칼럼 등을 통해 가지고 반박하고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다섯째 문화재청의 궁·능 관리업무를 해 왔던 문화재청 직원을 전담관으로 지정해서 감시하고 그 사람의 비리를 캐내 가지고 고소·고발할 것.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문화재청에

지시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문화재전문위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문화재 현장조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현재는 전문위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현재는 아닌데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황평우 전 문화재전문위원을 대상으로 문화재청 직원이 전담관으로 배치됐다고 나오는데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화재청장 김현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 내용을 모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문화재청 의견을 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위원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위원 및 무형문화재 개혁방안 법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반대를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위원제도와 위원들의 흠결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문화재청 입맛에 맞는 법안만 발의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문화재위원회는 법적 성격이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 성격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에 위원추천위원회를 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헌 위원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요 바뀔 게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허송세월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사람, 문화재위원들의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비리를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종환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坤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

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검토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입법조사관님들도 포함해서 좀 더 진력을 해 주시면 법안 검토가 심도 있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전 세계에서 시간으로 보면 법을 제일 많이 고치거나 만드는 그런 국회입니다. 그것을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많이 손을 대면,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제정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할 때도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법을 고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일하는 국회라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지 건수로 하는 국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지금 열세 분께서 언론중재와 관해서 법 개정이 올라와 있지요, 오늘도 한 건 올라갑니다마는.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는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관도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상당히 다면적으로 봐야 할 그런 사안이고 현장 적용에 관한 것도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국민과 언론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의 공청회가 필요한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박정 위원님 질의라든지 이상헌 위원님 질의를 보면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라든지 그리고 아특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의논해서 정부의 주요 현안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서 궁금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열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예, 그 문제는 양당 간사님이상 의해 주세요, 박정 간사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는 상임위를 열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예,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금방 이달곤 간사님께서 현안질의 할 수 있는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문체위 관련된 현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법안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소상공인들 또 업체들 손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수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일자리대책 관련 예산들이 추경까지 해서 집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얼마 전 4월 14일 날 청와대 전효관 문화비서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시에 전효관 비서관이 티팟이라는 문화 관련 기획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티팟에서 혁신기획관 재직하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서울시 사업들을 수주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60억 정도 18개 사업을 수주했었는데 많은 사업들이 혁신기획관이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감찰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 외에 저희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전효관 비서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장관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이상의 예산을 문화 관련되는 업체에, 기관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서울시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또 특혜 의혹에 비추어 봤을 때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문예위 재직기간 중에서도 관련되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 특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 사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문체부 산하기관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민간 업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이런 기관들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문체부 차원에서 적정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추후 우리가 현안질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와 아울러서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까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또 최근 김어준 TBS 방송인의 굉장히 과도한 출연료에 대해서도 연일 언론에 비판적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적폐 청산이라고 외치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친여 성향의 방송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출연료를 과도하게 주는 사례들이 속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체 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추후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위원님, 당연히 문체부가 소속기관이라든가 관련 협회가 정부 세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한 비위 사실이라든가 제보가 없는데 감사원에 요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체적으로 관련해서 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살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이미 대통령께서도 상당 부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 지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라도 긴밀히…… 특히 서울시에서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굉장히 과도한 예산들이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들한테 편향적으로 지원됐다는 이런 의혹들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 산하기관 또 지자체에서 문체부의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문화 관련 예산들의 집행사항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아주 세심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 내지는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락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위원장 도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도종환 의사진행발언요?

○배현진 위원 예.

○위원장 도종환 말씀하세요,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보임되어서 오신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원내 논평도 나왔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전해 드리면서, 그 이유는 아마도 고위 공직에 나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데 얼마나 신중하고 냉철하게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논란과 문제를 만들어 불거진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숙과 자중은 고사하고 순번이 돌아온 고위공직자에, 다시 그 자리에 나서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참 유감이었고, 그러나 그 점을 지적했을 때 다른 상임위가 아니라 유독 문화계, 체육계, 관광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 토양을 만드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로 오셨다는 점에서 저희 모든 국민의힘 위원들은 굉장히, 몹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양껏 환영하고 축하해 드리지 못하는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시는 것 저희가 열심히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말씀 위원장님께 올리면서, 위원장님 따뜻하게 품어 주셨지만 저희 몹시 놀랐다는 점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 위원 우리 배현진 위원님께서 격하게 환영해 주셨는데 김의겸 위원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배현진 위원님처럼 방송계에 계셨고요, 언론계에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는 과방위와 문체위를 오시는 게 맞다…… 원래 의원님이 있었던 데는 다른 상임위였습니다. 그 상임위를 가지 않으시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발휘하시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더 따뜻하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0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1일 수요일 및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각각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 소위원장님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수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김예지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김현모 청장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예 지	김 의 겸
도 종 환	박 정	배 현 진	윤 상 현
이 달 곤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용
최 형 두			

○청가 위원(2인)

유 정 주 임 오 경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 회 재 양 경 숙 최 강 욱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 재 주
전 문 위 원	천 우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황 희
제 1 차 관	오 영 우
제 2 차 관	김 정 배
기획조정실장	김 현 환
문화예술정책실장	박 태 영
미디어정책국장	김 대 현
체육국장	유 병 채
관광정책국장	김 장 호

문화재청

청 장	김 현 모
차 장	강 경 환
기획조정관	윤 순 호